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.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3. 5. 2. 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4월 25일

나. 제 출자: 고기판 의원 외 6인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4월 25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3. 4. 2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고기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, 재난대비,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·증대되고 있는 통장의 기능을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보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(제1조)
-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구체화 함 (안 제5조)
- 다양화·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통장 임무 정비 (안 제7조제1항각호<1~9호>)

-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(안 제7조제1항1호)
-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(안 제7조제1항2호)
-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·위기가정 발굴 지원(안 제7조제1항3호)
- 주민의 거주,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(안 제7조제1항4호)
-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(안 제7조제1항5호)
-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·관리 협조(안 제7조제1항6호)
- 각종 사건·사고 보고와 풍·수해, 제설 등 지원(안 제7조제1항7호)
-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(안 제7조제1항8호)
- 각종 고지서,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(안 제7조제1항9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 기 영)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 간을 규정하고 통장의 기능을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보강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임.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에 본조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,
 - 안 제5조에는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위촉 해제된 통장은 3년 이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는 재난대비,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요 구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통장의 임무를 보강 및 정비함.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위촉 해제된 통장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, 1988년 제정 이후 동 기능전환 등을 거치면서 일선행정의 보조자 기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

는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임무를 보강 및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재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, 통장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의 행정수요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,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0

> 발의연월일:2013년 4월 일 발 의 자:고기판 의원 외 명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, 재난대비,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、증대되고 있는 통장의 기능을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보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우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(제1조)
- 나.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 기간을 구체화 함.(안 제5조)
- 다. 다양화、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통장 임무 정비 (안 제7조제1항각호(1~9호))

-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(안 제7조제1항1호)
-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(안 제7조제1항2호)
- 저소득기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지원(안 제7조제1항3호)
- 주민의 거주,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(안 제7조제1항4호)
-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(안 제7조제1항5호)
-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·관리 협조(안 제7조제1항6호)
- 각종 사건·사고 보고와 풍·수해, 제설 등 지원(안 제7조제1항7호)
-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(안 제7조제1항8호)
- 각종 고지서,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(안 제7조제1항9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제4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불필요

다. 합 의: 자치행정과 합의

라. 기 타: 조례안 별첨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장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4조제6항"을 "제4조의2제5항"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⑤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통장은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. 제7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
 - 2.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
 - 3.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지원
 - 4. 주민의 거주,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
 - 5.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
 - 6.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、관리 협조

- 7. 각종 사건、사고 보고와 풍、수해, 제설 등 지원
- 8.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
- 9. 각종 고지서,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
- 10.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"가구주 또는 주부로"를 "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"로 한다. 제10조 중 "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문서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"을 "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이용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반장에게는 상여금"을 "반장에게는 상여금 또는 보상 품"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	제1조(목적)
치법」 <u>제4조제6항</u> 의 규정에	<u>제4조의2제5항</u>
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	
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	
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	
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	
하부조직인 통 `반의 조직과 운	
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	
적으로 한다.	
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	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、해촉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구청장은 통장을 , 동장은 반	4
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	
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5.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5. · 6. · 7.(생 략)	<u>6</u> . · <u>7</u> . · <u>8</u> . (현행 제5 호, 제6
	호 및 제7호와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⑤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
	제5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
	까기이 사으근 의초 체제되 토

- 제7조(임무) ① 통、반장은 동장 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 행한다.
 - 1.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
 - 여론, 요망사항의 보고
 - 3. 주민의 거주. 이동상황파악
 - 4. 각종 시설 확인
 - 5. 자치회관 및 새마을사업추 진협조지원
 - 6. 통、반원의 비상연락 훈련
 - 7.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(전시 에 한함)
 - 8.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 필품 배급(전시에 한함)
 - 9.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

장은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.

제7조(임무) ① -----

- 1.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
- 2.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2.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 퍾사항 파악 보고
 - 3.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과 틈새계층、위기가정 발굴 지워
 - 4. 주민의 거주, 이동상황 파악 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
 - 5.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 사 협조
 - 6.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 지、관리 협조
 - 7. 각종 사건 사고 보고와 풍 · 수해. 제설 등 지원
 - 8.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
 - 9. 각종 고지서, 통지서 송달

<u>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</u> <u>항</u>

<u>〈신설〉</u>

- ② (생 략)
- 제8조(반상회) 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<u>가구주 또는 주부로</u> 구성한다.
 - ②、③ (생략)
- 제10조(편의제공) 통 `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 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문서 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 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 를 제공받을 수 있다.
- 제11조(수당 등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에게 수당과 상여금을, <u>반장에게는 상여금을</u> 지급할 수 있다.

<u>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</u>
<u>원</u>
10.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
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
사항
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반상회) ①
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
②、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편의제공)
동
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이용
제11조(수당 등) ①
반장에게는 상여
<u>금 또는 보상품</u>